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식품상표통용표준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foods)
(국가기술감독국 1994. 2. 4 승인, 1995. 2. 1 시행)

(자료 : 주중국대사관)

1. 주요내용 및 적용범위

- 본 표준은 식품상표의 기본 원칙·상표등록 내용과 상표등록 구비조건을 규정한다.
- 본 표준은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포장을 준비하는 식품의 상표에 적용한다.

2. 인용표준

- GB 2760 식품첨가제 사용위생 표준
- GB 13432 특수영양식품 상표

3. 용어 정의

3.1 식품 상표

포장을 준비하는 식품 용기 상의 문자·도형·부호 및 일체의 설명물

3.2 포장을 준비하는 식품

용기에 포장을 준비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공급을 준비하는 식품

3.3 용 기

식품의 완전 혹은 일부 포장으로 물품 인도 업체가 제작한 모든 포장 형식으로 포장 지 또한 포함한다.

3.4 식품첨가제

식품의 품질·색깔·맛을 개선을 위해 또한 방부와 가공 공정의 필요에 의해 첨가하는 식품 중의 화학합성물질 혹은 천연물질

3.5 배합원료

식품의 제조 혹은 가공 시에 사용하는 것 또한 최종 제품 중에 존재(성질이 변한 형 식으로 존재하는 것 포함)하는 어떠한 물질. 물과 식품첨가제 포함

3.6 품질 보존기간 (식용 최적기)

상표 상에서 규정한 조건하에서 식품 품질을 유지하는 기한을 지칭한다. 이 기간에는 식품 판매가 가장 적합하고 또한 상표 상 혹은 제품 표준 중에 규정한 품질에 적합하고 이 기간 경과 시 일정 기간까지는 식품 식용이 가능하다

3.7 보존기간 (추천 최종 식용 기간)

상표 상의 규정한 조건하에서 식용 가능한 식품의 최종 기일로 이 기한이 초과하면 제품 품질에 변화 가능성이 있고 이런 식품은 더 이상 판매에 적합하지 않다.

3.8 고체형 물질

고체·액체 두 가지가 함께 함유된 물질의 식품 중 고체부분은 가용성 고체형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다.

4. 기본 원칙

4.1 식품 상표의 모든 내용은 착오나 쉽게 오해를 야기하거나 혹은 제품을 기만성의 방식으로 기술하거나 소개해서는 안 된다.

4.2 식품 상표의 모든 내용은 소비자가 식품 혹은 식품 모종의 품질을 또한 다른 제품과 혼돈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도형·부호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암시해서는 안 된다.

4.3 식품 상표의 모든 내용은 국가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또한 해당 제품의 표준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4 식품 상표의 모든 내용은 평범하고 알기 쉽게 정확, 합리적이어야 한다.

5. 필수 등록 내용

5.1 식품 명칭

5.1.1 반드시 식품 진실성을 표현하는 전용(專用)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5.1.1.1 국가 표준 혹은 해당 업종 표준에 이미 모(某) 식품의 한 개 혹은 여러 개 명칭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5.1.1.2 위에서 기술한 규정의 명칭이 없을 시 소비자의 오해 혹은 혼돈을 주지 않는 상용 명칭 혹은 속칭을 사용해야 한다.

5.1.2 “새로 만든(新創) 명칭”, “기묘하고 특이한(奇特) 명칭”, “번호 명칭” 혹은 “상표명칭” 사용 시 5.1.1 조 중에서 규정한 임의로 1개 명칭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5.1.3 소비자가 식품의 진실성, 물리 상태와 제조 방법에 대한 오해 혹은 혼돈을 피하기 위해 해당 단어 혹은 구(句)를 식품 명칭 앞에 부가하거나 식품 명칭 후 주석(註釋)하여 밝힐 수 있다.

5.2 배합 원료표

5.2.1 단일 배합원료의 식품을 제외하고 식품 상표 상에 배합 원료표를 표기하여야만 한다.

5.2.1.1 배합원료표의 표제는 “배료(配料)” 혹은 “배료표(配料表)”이다.

5.2.1.2 각 종 배합원료는 투입량의 체감 순위에 따라 하나 하나 배열하여야 한다.

5.2.1.3 만약 어떤 종류의 배합원료 자체가 두 종류 혹은 두 종류 이상의 기타 배합원료로 구성된 복합 배합원료이면 반드시 배합원료표(配料表) 중 복합 배합원료의 명칭을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 후 추가 등록하고 투입량의 체감순서에 따라 하나 하나 원 배합원료를 나열한다. 복합 배합원료는 국가표준 혹은 해당업종 표준 중 이미 규정된 명칭이 있고 투입량이 식품 전체량의 25%보다 적을 시, 원 배합원료 표기가 불필요하지만 이 중 식품첨가제는 반드시 표기한다.

5.2.2 각 종 배합원료는 5.1 조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첨가제는 GB2760규정의 제품 명칭 혹은 종류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이 중 감미제·방부제·착색제는 구체적인 명칭을 표기하여야 한다.

5.2.3 가공 과정 중 필요한 원료가 이미 기타 성분으로 변질되었을 시(발효제품을 지칭하며 술, 간장, 초등을 말함) 제품 본연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배료(配料)”를 대체하여 “원료(原料)” 혹은 “원료(原料) 및 배합원료(配料)”로 사용 할 수 있고 또한 5.2.1.2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등록을 한다.

5.3 순합량 및 고체형 물질 함량

5.3.1 용기 중 식품의 순합량 표기는 반드시 아래 방식에 의거 표기한다.

- a. 액체식품, 체적 기준
- b. 고체식품, 질량 기준
- c. 반고체 식품, 질량 및 체적 기준

5.3.2 용기 중 고체·액체가 함께 혼합된 식품은 순합량 표기 외에 해당 식품의 고체형 물질 함량을 표기해야만 하고 질량이나 %로 표시한다.

5.3.3 동일 용기 중 만약 함유 물질이 상호 독립적이거나 품질이 상이(相異)하고 형태가 비슷한 몇 종류의 식품은 순합량을 명시하고 또한 반드시 식품 수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5.4 제조자, 대리 사업자의 명칭과 주소

- 식품제조, 포장, 분리포장 및 판매업체는 법에 의거 영업 등록증의 명칭과 주소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은 원산국명, 지역명(홍콩, 마카오, 대만)을 총대리 사업자는 국내법에 의거 영업 등록증의 명칭과 주소를 표기하여야 한다.

5.5 기일(期日) 표시와 저장 지침

5.5.1 식품의 생산일자, 품질보존기간, 보존기간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5.5.1.1 기일의 표기 순서는 년, 월, 일이다.

5.5.1.2 품질보존기간 혹은 보존기간 명시는 아래 방식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a. “…… 전(前) 식용이 가장 좋음” 혹은 “…… 전(前) 음용이 가장 좋음” (품질보존기간에 사용)
 “…… 전(前) 식용이 가장 적합” 혹은 “…… 전(前) 음용이 가장 적합” (품질보존기간에 사용)
 “…… 전(前) 식용” 혹은 “…… 전(前) 음용” (보존기간에 사용)
- b. “품질보존기한 …… 까지”
 “보존기한 …… 까지”
- c. “품질보존기한 ……개월”
 “보존기한 …… 개월”

5.5.2 만약 식품의 품질보존기한 혹은 보존기간 및 저장조건과 관련된다면 반드시 식품의 저장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5.6 품질(quality)등급

제품 표준(국가표준, 업종표준) 중 이미 명확히 규정된 품질(quality) 등급의 식품은 식품의 품질등급을 명시해야 한다.

5.7 제품 표준 번호

제품의국가표준·업종표준 혹은 기업표준의 고유번호와 일련번호를 표기한다.

5.8 특수상표등록 내용

5.8.1 전리(電離) 방사선 혹은 전리 에너지로 처리한 식품은 반드시 식품명칭 부근에 “투사식품”을 명시하여야 한다.

5.8.2 전리(電離) 방사선 혹은 전리 에너지로 처리한 어떠한 배합원료도 반드시 배합원료 표 중에 부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6. 상표등록 면제 허가 내용

6.1 해당 용기의 최대 표면의 면적이 10cm보다 작을 시 향신료와 식품 첨가제 이외에 5.2와 5.5~5.7조의 내용을 면제할 수 있다.

6.2 제품표준 (국가표준,업종표준) 중 이미 품질보증기간과 보존기간을 18개월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은 품질보증기간과 보존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6.3 수입식품은 원 제조업체의 명칭·주소와 제품 표준번호를 면제할 수 있다.

7. 상표등록 권장 내용

7.1 허가번호

식품의 생산 혹은 분리 포장 업체는 스스로 확정한 방법으로 식품의 생산(분리포장) 허가번호를 표기한다.

7.2 식용방법

식품의 정확한 식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표 상에 용기의 여는 방법, 식용방법, 일일 권장 섭취량, 요리 재 제조방법 등 소비자에 대해 협조할 수 는 설명을 표기할 수 있다.

8. 기본 구비 조건

8.1 식품상표는 포장용기와 분리해서는 안 된다.

8.2 식품 상표의 모든 내용은 유통 체계 중 변질되어 모호하게 되거나 더욱이 삭제되어서는 안되며 소비자 구매와 식용 시 눈에 선명히 들어오고 식별과 이해에 용이할 야 한다.

8.3 식품상표의 일체내용은 분명하고 간략하며 눈에 선명히 들어 와야 한다.

8.4 식품명칭은 상표 중 눈에 선명히 들어오는 위치이어야 한다.

8.5 식품상표에 쓰는 문자는 규범화된 한자이어야 한다.

8.5.1 중국어 발음부호를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발음 부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해당 한자보다 크게 할 수 없다.

8.5.2 중국 소수민족문자와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중국어와 구성이 치밀한 대응 관계이어야 하고 외국어는 해당 한자보다 커서는 안 된다.

8.6 식품 상표에 쓰이는 계량 단위는 국가 법정 계량 기관이 승인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 질량단위 : g혹은 克(중국의 g단위), kg 혹은 千克(중국의 kg단위) · 체적단위 : mL,ml 혹은 毫升, l(리터) 혹은 升(중국의 리터 단위)

부가설명

본 표준은 전국식품공업표준화기술위원회가 제출했다.

본 표준은 전국식품공업표준화기술위원회 기획한 초안 업무팀이 초안을 책임졌다.

본 표준 주요 초안 작성자는 두펑(杜朋), 폐이산(裴山), 리즈창(李志强), 천야오춘(陳瑤君), 하오위(郝煜), 리홍빙(李紅兵)

본 표준 FAO/WHO 식품법규위원회(CAC)CODEXSTAN1-1991《포장준비식품상표통용기준》을 채택 참조하였다.

주 : 본 문은 국가기술감독국 기감(技監)국가상표관련 문서(1995)208호

《식품상표통용표준》제1호 개정서식과 국가질량기술감독국 품질기술감독 국가상표 관련문서 (1998)127호《식품상표통용표준》제2호 개정서식을 개정하였다.